

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?

“특허기술사업화 이해를 위한 시리즈 20”

직무발명이란, 근로자가 소속 기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명한 기술을 말합니다.
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요건은 ① 소속 근로자 즉, 교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하며,
② 발명의 성질이 업무 범위에 속하고 교직원의 직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그리고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.

직무발명 예시

- ✓ 순천향대학교 병원 교원이 자동차 엔진 출력 향상 장치를 발명한 경우 (×)
- ✓ 순천향대학교 영상의학과 교원이 x-ray 검사용 소모품 하나를 발명한 경우 (○)

❖ **교직원은 직무발명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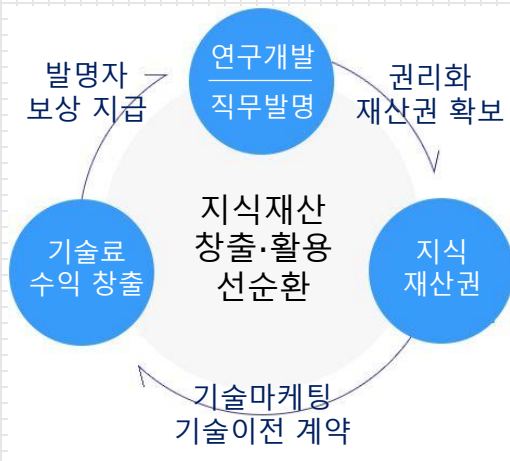
특허기술이전센터 담당자 오현미 선생님

☑ 특허기술이전센터는 앙뜨레프레너관 5층에 있습니다. 언제든지 상담과 문의 환영합니다!!

직무발명제도란 무엇인가요?

“특허기술사업화 이해를 위한 시리즈 21”

직무발명제도란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을 학교가 승계하고, 이에 대한 대가로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.



✓직무발명에 따라 발명자는 대학으로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해당 특허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.

순천향대학교에서는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대가로 수취한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<직무발명 보상금>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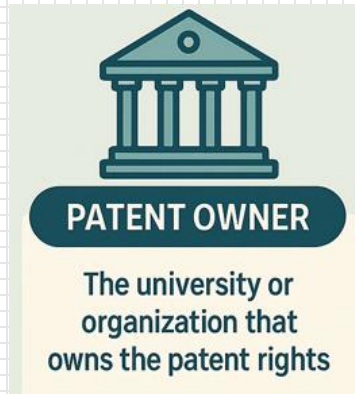
특허기술이전센터 담당자 오현미 선생님

☑ 특허기술이전센터는 앙프레프레너관 5층에 있습니다. 언제든지 상담과 문의 환영합니다!!

발명자 특허권자 직무발명제도

“특허기술사업화 이해를 위한 시리즈 22”

직무발명제도에 의해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**발명을 학교가 승계**하고, 이에 대한 대가로 **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**을 합니다.



순천향대학교에서는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대가로 수취한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<직무발명 보상금>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
"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을 승계한다" <국가 법률 '발명진흥법' 제 10조 >

특허기술이전센터 담당자 오현미 선생님

특허기술이전센터는 앙프레프레너관 5층에 있습니다. 언제든지 상담과 문의 환영합니다!!